[별지 제3호 서식] (앞 쪽)

건 설 업 등 록 증

1. 업종 및 주력분야 :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

2. 등록번호 : 인천남동06-28-01-02

3. 상호 : 장한기술(주)

4. 대표자 : 유해성,유원대

5.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7-16 장한기술(주)

6.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110111-0708614

7. 국적(소속 국가명) : 대한민국

8. 등록일자 : 2006.02.10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2023 년 1 월 13 일

충청남도 당진시장 (인)

당진시장인

주 의 사 항

1. 본 수첩은 입찰시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동법 제96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 받은 자는 당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의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동법 제100조의1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4.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허위로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9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5. 본 수첩의 기재 내용을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인이 휴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건설업등록수첩

업 종	가스난방공사업	등록번호	인천남동 06-28-01-02
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		
상 호	장한가들(주)	대 표 자	유해성, 유원대
주된 영업소 소 재 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중전나길 217-16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110111-0708614
국 적 (소속국가명)	대한민국	등 록 일 자	2006. 2. 10

위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2023 년 1월 13일

당 진 시 장

당진시장인